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가단508945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엘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라

변 론 종 결 2022. 4. 22.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261,542원 및 그 중 29,368,963원에 대하여 2021. 3. 17.부터 2021. 8.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38,261,5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9.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피고 B은 위 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2018. 1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1. 3. 16. 기준 잔여 원리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일	약정금	잔여원금	지연이자금	소계	비고
2015. 5. 29.	50,000,000	29,368,963	8,892,579	38,261,542	2021.3.16.까지 이자를 계산한 것

나. 피고 B은 2018. 3. 13.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 C에게 2018. 3. 13.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18. 8. 9.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그 무렵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억 원이었고, 채권최고액 200,4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51,691,376원이었다.

마.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18. 10. 8.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인 148,662,150원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0. 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38,261,542원 및 그 중 잔여원금 29,368,963원에 대하여 2021. 3.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8. 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여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피고 C에게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할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인 2018. 3. 13.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여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정도 후 피고 B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적극재산 중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 을 제1 내지 4, 8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 B이 피고 C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양도받았고 이후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는바, 피담보채무의 액수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의 1/2 상당액에 이르고, 위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는 피고 B이며 달리 위 채무가 피고들의 부부공동생활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 B은 피고 C의 변제에 의하여 피담보채무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B 명의의 재산이기는 하였으나, 피고 B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그 매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 C나 피고 C의 가족들이 출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들이 더 많이 존재하는 점

③ 피고 B은 이혼 당시에도 채무초과 상태였고 자 D에 대한 매월 1,500,000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이혼시 합의하였으나 이후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D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총액이 42,000,000원에 이르는 점

④ 피고 C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도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2019. 11. 9. 피고들이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2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피고 C가 위 결정금액을 모두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점

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매수자금 형성의 경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고, 피고 B의 채무를 결과적으로 피고 C가 대신 변제하게 된 액수가 상당하며, 자 D의 양육비나 피고 C 본인의 부양료 성격의 돈을 피고 B이 별도로 지급하지도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피고 C에게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하현우

별지